



강 남 구



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상고 포기 지휘 요청(2015누55525)

다음 소송 사건에서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고포기 지휘를 요청합니다.

가. 사건개요

- 사 건 명 : 2015누55525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
- 당 사 자 : 원 고 박옥성 외 8명
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- 소 가 : 142,040,840원
- 관할법원 :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
- 소송수행자 : 세무1과 세무6급 위성욱, 세무7급 김미경
(소송대리인 : 법무법인 한길 하태웅 변호사)

나. 소송진행사항

- 2015. 7. 31. 항소장 접수
- 2016. 3. 23. 1차 변론기일
- 2016. 4. 6. 2차 변론기일
- 2016. 4. 20. 판결선고(항소기각)
- 2016. 4. 28. 판결문 접수

다. 판결내용

-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

라. 우리구 의견 : 상고 포기

- 붙임 1. 상고포기의견서 1부.
2. 패소원인분석표 1부.
2. 판결문사본 1부.
3. 대법원사건진행내역 1부. 끝.

강 남 구 청 장

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(소송사무제2과장), 기획예산과장

주무관 김미경 재산3팀장 위성욱 세무1과장 신길호 기획경제국장 전결 05/02
김용운

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 박도규
장

시행 세무1과-8531 () 접수 ()

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
전화 02-3423-5664 /전송 02-3423-8866 / dulrik@gangnam.go.kr / 부분공개